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19 발의연월일: 2020. 7. 23.

발 의 자 : 김교흥 · 맹성규 · 이성만

정일영 · 정정순 · 김경만

김정호 · 문진석 · 허종식

유동수・박찬대・신동근

윤관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. 법률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,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·군·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음. 따라서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·면·동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.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·면·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6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1항 후단 중 "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"를 "투기과열지구는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(행정동을 말한다)의 지역 단위에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	제63조(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
해제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	해제) ①
시·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	
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	
거정책심의위원회(시·도지사의	
경우에는 「주거기본법」 제9	
조에 따른 시·도 주거정책심의	
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	
서 같다)의 심의를 거쳐 일정	
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	
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.	
이 경우 <u>투기과열지구의 지정</u>	<u>투기과열지구는 시·군·</u>
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	<u>구 또는 읍·면·동(행정동을 말한</u>
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.	<u>다)의 지역 단위에서 그 지정</u>
	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
	의 범위로 지정한다.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